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9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 박수민 · 김소희 · 이헌승

임종득 • 이인선 • 김미애

윤한홍 • 조지연 • 박준태
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,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. 모빌리티 분야의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,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시·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, 용량증대, 환경개선, 에너지 절감, 편의성 증대, 안정성 확보,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.

미래 이동수단(Mobility)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, 개인용 비행체(PAV), 도심항공이동수단(UAM)과 친환경·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, 하이퍼루프, 친환경·자율운항 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육상·해상·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음.

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.

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,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실정임.

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, 그 지 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.

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,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,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'미래형 이동수단'의 범위에 육상·해상·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·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,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미래형 이동수단"을 "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안 혅 행 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-----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인 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 나만을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 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----- 미래형 운송 및 이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동수단-----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

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

가.·나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

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					
3. (현행과 같음)				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			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					
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.

- 1. (생략)
- 2. 공제금액
 - 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 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
 - 1) (생략)
 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

1 /귀케키 키 ()
1. (현행과 같음)
0
2
1
가
•
-,
4) (=1 =1 =1 =1 =) ()
1) (현행과 같음)
2)
2)
17일 21이
2 <u>027년 12월 31일</u>

분의 15(중소기업은 100 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 액

나. (생 략)

3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